

행 정 자 치 부

시 정 요 구

제 목 보행자 안전위험시설(불량 블라드) 정비업무 추진 소홀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

내 용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07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자동차 진입억제 말뚝(Bollard)과 관련하여 “5년 내에 부적격 블라드를 개량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한 사실이 있으며, 그동안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부적격 블라드에 보행자가 걸리는 사고로 배상금을 지급한 건이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였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에서는 2014. 2월 ○○도 특정감사 및 시·도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면서 부적격 블라드를 전면 철거하라고 처분하였고, 또한 전 시·도의 공통사항으로 파악되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2015. 1월 전국 시·도지사에게 부적격 블라드를 전면 철거하라고 통보한 사실이 있다.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별표2와 같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되어 있다.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기준에 의하면

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높이는 80~100cm 내외로 하고, 그 지름은 10~20cm 내외로 하여야 한다.

라.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간격은 1.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마.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 할 수 있는 재료로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30cm 전면(앞쪽)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의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럭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강원도 ○○○○과에서는 행정자치부 감사담당관-000호(2015. 1. 22.)로 통보한 보행자 위험안전시설(부적격 블라드) 정비업무 건과 관련하여 강원도 감사관실에서 각 부서 및 시·군에 동 건을 통보하였는데도, 점검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부적격 블라드가 철거되도록 시·군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지 않음으로써, 감사일 현재까지 17개 시·군에 부적격 블라드 총 6,657개를 철거 또는 교체 등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표] 부적격 볼라드 현황(2016. 8. 31. 현재)

시·군	합계 ①+②	적 합				부적격						
		수량① (소계)	적법 수량	보수 완료	기보수 예산	수량② (소계)	높이	간격	재질	반사	기타	소요 예산
계	12,788	6,131	5,518	554	74.2	6,657	3,357	69	3,075	54	102	2,441
춘천	1,479	513	502	11	3	966	304	28	584	50		300
원주	6,092	2,598	2,563	35	10	3,494	2,792		702			1,048
강릉	534	56	56			478			478			200
동해	764	478	478			286			286			114
태백	189					189			120		69	46
속초	470	66	56	10	5	404	176	41	183	4		161
삼척	90	64	16	48	10	26			26			25
홍천	1,943	1,691	1,374	317		252			219		33	300
횡성	476	440	359	81	30	36			36			15
영월	158					158	36		122			48
평창	49					49	49					26
정선	116	13		13	6.5	103			103			50
철원	62	26	24	2	1	36			36			22
화천	54					54			54			30
양구	94	59				35			35			12
인제	57	24	7	17	7	33			33			20
고성	58					58			58			24
양양	103	103	83	20	1.7							

※ 부적격 볼라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에서 허용되지 않는 볼라드

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는

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불량 볼라드(6,657개)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민피해로 인한 소송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군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②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보행시설물의 구조·설치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